「한국지방행정학보」 제2권 제1호(2005. 8): 25-44

한국 노인 학대의 제도적 개입 전략

Institutional Intervention Strategies aginst Elder Abuse in Korea

이 연 호 (경희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Elder abuse has become a recognized of intrafamilial violence, with the abuse of elderly individuals now recognized as a serious problem that affects individuals and families at a rapidly growing rates. The multifaceted nature of elder abuse issue, which involve social, legal, and environmental matters, requires that action take place on the social and legal levels and that it involve multiple system.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legal system and institutional intervention strategies against elder abuse in Korean context. To this end, this study focuses on reviewing three major aspects : the definition of the term elder abuse and types, the legislation and regulation related to elder abuse, and the importance and improvement of legal and the available social support system and services based on the institutional intervention. Finally, on the basis of these analysis, this study discussed and recommended the future direction of social support system and program of elder abuse in Korean context.

키워드 : 노인학대, 노인학대 법률, 제도적 개입

Key Words : Elder Abuse, Institutional Intervention, legislation and regulation related to elder abuse

Ⅰ. 서 론

21세기 한국사회의 인구학적 변화 중 가장 두드러지는 특색은 노인인구의 급속한 증가와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인한 고령화 현상이다. 노인인구는 2000년 이미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였고 이후 2019년에는 고령사회로, 2026년에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예

정이며 평균 수명은 의학기술에 진보에 힘입어 2001년 남성노인은 72.8세, 여성노인은 80세를 넘어선 상황이다(통계청, 2004). 이런 사회의 구조적 변화 속에서 노인복지에 대한 인식과 욕구가 전반적으로 증대하고 다양하게 분출되고 있으며 사회 변화에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한 결과로 노인문제 또한 각 분야에서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조류를 타고 사회적 개입과 대응이 시급히 요구되는 노인문제 중 하나가 노인학대 이다.

학대나 폭력에 취약성을 가지는 인구집단으로서의 노인인구의 급속한 증가, 현대 가족의 구조 및 기능의 변화로 인한 부양의식의 약화, 사회적 지원의 부족 등 사회구조적 위험요인을 안고 발생하는 노인학대는 1997년 가정폭력방지관련 특별법이 제정되는 등 가정폭력에 관한 관심의 증폭 속에 사회문제화 하였고 현재는 '가정사'나 집안일'의 범위를 넘어선 사회구조적 문제로 합의되고 이에 대한 대책과 개입이 활발히 모색되어지고 있다.

노인학대의 실태에 대한 조사는 지금까지 여러 연구자들에 의해 이루어져 왔는데 크게 단일 연구자에 의한 조사, 전문상담기관에 의한 조사, 전국규모의 조사 등으로 구분된다(서윤, 2004: 50). 전국규모의 조사가 아직 실시되지 못하고 있는 한국 상황에서 지역적으로 행해지는 조사는 한국 노인학대의 심각한 실태를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노인복지회관 이용노인을 중심으로 한 '노부모학대 실태에 관한 사례연구'(1999)는 8.2%에 해당하는 노인들이 자녀 및 가족원으로부터 학대를 받은 경험이 있음을 폭로하였으며 국가인권위원회 발표 조사결과(2003)에 의하면 노인 3명 중 1명은 한차례 이상 학대(37.8%)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노인학대에 대처하고 있는 공신력 있는 기관의 상담사례 현황은 보다 현실적인 노인학대 현황을 보여준다. 지난 2년간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지원으로 노인학대 신고를 접수받고 상담 및 관련 서비스를 주도적으로 실시한 노인학대 상담센터의 통계에 의하면 노인학대 사례는 2003년 1월부터 12월 까지 939건이 접수되었으며 2004년 1월부터 12월 까지 접수된 사례는 1,123건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에 비하여 39% 이상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노인학대상담센터, 2005). 또한 전국 시, 도에 노인학대예방상담센터를 설치하여 노인학대문제에 대한 접근과 해결을 위해 노력해온 전국노인학대예방상담센터(재가노인복지총서, 2002: 33-35)에 신고된 학대사례를 보면 2001년 130건, 2002년 1/4분기는 17건, 2/4분기는 56건, 3/4분기는 67건으로 계속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이는 양적인 면에서는 많은 신고건수로 볼 수 없지만 아직 노인학대 인식이 저조한 한국사회에서 노인학대 신고건수가 월 평균 80사례에 이르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노인학대는 여러 가지 다양한 상황과 장소에서 발생하며 노인개인과 가족, 사회, 문화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관련되어 나타나는 복잡한 현상으로 사회적 개입과 지원에

상당한 제한을 받는 영역인 것도 사실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1995년부터 노인학대의 심각성이 인식되어 노인학대와 관련된 연구가 시작되었으며 정부 역시 1995년 이후부터 노인학대에 관한 본격적 관심을 갖기 시작하였다. 그 결과 다양한 방면의 조사와 연구가 진행되었고 2002년 12월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의 지원을 받아 노인학대상담센터가 설립되어 학대받는 노인과 가족을 대상으로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일반 시민에게 노인학대에 대한 홍보와 교육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특히 2004년 1월에 노인복지법을 개정하여 노인학대 방지를 위한 법적인 장치가 마련되어 긴급전화(1389)와 노인보호전문기관이 탄생되는 등 노인학대에 대한 제도적, 실천적 개입이 급진전을 보이고 있다.

특히 노인학대에 대한 제도적 대응으로서 노인복지법의 개정은 노인학대를 국가적으로 예방, 방지하겠다는 방향의 확고한 의지를 표명하며 노인학대에 관한 예산편성과 개입근거를 마련해줌과 동시에 다각적으로 개입방법을 모색할 의무를 부과한다는 의미를 지닌다. 그러나 우리사회 내에서 노인은 법적 인격체로서의 비중을 점점 크게 차지해가고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치매 및 와상노인의 경우 권리행사가 불가능하고 그 외에도 노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물리적, 심리적으로 권리행사에 많은 제약을 갖게 된다(정은숙, 2005). 특히 피학대노인의 경우 피해자 스스로 법률적인 행사를 기피하는 경향이 있고 처벌위주의 법적대응이 노인과 가족들에게 피해를 더하고 있다.

노인학대에 대한 제도적 대응이 진일보하는 중요한 전환기인 현 시점에서 법적, 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실효를 거두고 진전된 제도적 접근이 유명무실한 제도로 남지 않으려면 한국의 노인학대의 제도적 개입은 많은 과제를 안고 있다. 따라서 본 고는 현재 한국 상황에서 노인학대와 관련된 법률에서 나타나는 한국 노인학대의 개념과 유형을 분명히 하며, 노인학대와 관련된 법률을 고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동시에 이를 바탕으로 하는 노인학대의 제도적 대응이 나아갈 향방의 논의는 궁극적으로 제도적 개입이 학대피해노인 및 가족의 복지전체를 증진시키는 역할의 모색이 되어야 하는 우리의 현실에 중요한 전략적 함의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Ⅱ. 노인학대의 개념 및 유형

노인학대는 다른 가족학대의 형태와 유사한 복잡한 현상으로 나타나 단일한 정의로 다양한 측면을 포괄하기는 어렵다. 특히 노인학대는 각 사회의 문화와 가치관을 반영하여 다양하게 정의된다. 다양한 연구와 조사를 거쳐 국가적 차원에서 규정된 외국의 학대개념 및 유형의 고찰은 현 시점에서 합의되고 있는 한국의 보편적 학대의 개념

및 유형의 이해를 가능하게 한다.

미국의 노인학대 정의는 법이 자주 개정되면서 학대의 의미와 대상자의 범위를 포괄적으로 넓혀왔다. 노인학대의 법적 정의는 신체적 학대, 심리적/정서적 학대, 성적학대, 재정적/ 물질적 착취, 방임, 유기와 자기방임을 포함하고 있다. 신체적 학대는 신체적 부상, 신체적 고통이나 손상을 초래하는 물리적 힘의 사용으로 때리기, 밀치기, 흔들기 혹은 물건이나 무기로 부상을 입히는 것과 같은 신체적 구타를 의미한다. 정서/심리적 학대는 괴로움, 정서적 고통 혹은 심적 고통을 가하는 것으로 언어적 공격, 모욕, 위협, 협박, 모멸과 괴롭힘을 포함한다. 성적 학대는 합의에 근거하지 않은 채 노인과 성적 접촉을 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원치 않는 신체접촉, 모든 종류의 성적 공격, 노골적인 성적인 사진 찍기를 포함한다. 방임은 노인의 욕구 충족에 필요한 것들이 부재한 것으로 음식, 의복, 주거, 필요한 약 복용 혹은 건강보호 및 개인수발, 사회적 교류가 부적절하게 제공되는 것을 말한다. 유기는 보살핌을 제공할 책임을 맡고 있는 사람이나 노인의 신체적 보호관리를 맡고 있는 사람이 노인을 버리는 것을 의미한다. 재정적/물질적 착취는 노인 소유의 재원, 재산, 자산을 불법적 혹은 부적절하게 사용하는 것이며 자기홀대는 자신의 건강이나 안전을 위해하는 노인의 행동이 특징으로 적절한 음식, 물, 의복, 주거, 안전, 개인위생, 약 복용을 거부하거나 자신에게 제공하지 않는 것을 포함한다(문애리, 2002: 7).

캐나다는 광범위한 지리적, 정치적 영향으로 보편적 노인학대 개념이 정립되어 있지는 않으나 보건국(Health Canada)은 노인학대를 '노인에 대한 신체적, 심리적, 재정적 해를 가져오는 행위'로 규정한다. 신체적 학대는 폭력; 거친 신체적 처우; 성적 착취; 음식물 공급의 실패; 적절한 개인적, 치료적 보호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를 의미하며 심리적 학대는 언어적 학대; 사회적 고립; 애정공급의 실패; 노인 의사결정 과정의 기회제한, 거절 등이다. 재정적 학대는 노인자산의 착취와 사기를 포함한다. 1999년 Ontario Legislative Assembly는 약물학대(Medication abuse), 기본적 권리와 자유의 침해, 유기와 자기방임을 추가하였다(EAP, 2001: 이연호 2002 재인용). 일본의 경우 고령자 안전보호에 관한 조사연구 사업보고서-고령자 학대실태에 관한 조사연구(1996년/평성 9년)는 학대를 신체적 폭력에 의한 학대, 성 학대, 심리적 장애를 유발하는 학대, 경제적 학대, 그리고 일상생활에 필요한 간호 등을 방임, 거부, 태만 하는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광의의 노인학대는 가정 내 학대, 시설 내 학대, 자기방임이나 자학 등 크게 3범주로 분류한다. 이 중 가정 내 학대는 '배우자, 자녀, 형제, 친구, 보호제공자 등 노인과 특별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에 의하여 노인의 자택 또는 보호제공자의 거주지에서 행하여지는 학대'이다(鈴木眞理子 外, 1999: 이연호 2002 재인용). 영국의 Action on Elder Abuse(AEA)는 노인학대를 '신뢰가 기대되는 관계에서 발생하는 노

인에게 상해나 고통을 일으키는 단일한 혹은 반복적인 행동이나 적절한 행위의 결핍'으로 정의하고 5가지 유형을 제시하였다. 외국의 노인학대 개념 및 유형을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표 1> 외국 노인학대 개념 및 유형

국가	학대의 개념	학대의 유형
미국	-The Action on Elder abuse: 모든 관계에서 발생되는 노인에게 해나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단일한 혹은 반복적 행동, 적절한 행동의 부족	-노인국과 국립노인학대센터: 신체적 학대, 성 학대, 심리적 학대, 재정적/물질적 착취, 방임을 일반적 유형으로 규정
캐나다	-Health Canada: 노인에 대한 신체적, 심리적, 재정적 해를 가져오는 행위 -가족폭력 예방기구(The Prevention of Family Violence): 노인에게 해를 입히는 고의적 행동, 행위의 결핍	-가족폭력 예방기구: 신체적 학대, 성 학대, 심리적 학대, 재정적 학대, 방임으로 규정
영국	-Action on Elder Abuse:신뢰가 기대되는 관계에서 발생하는 노인에게 상해나 고통을 일으키는 단일한 혹은 반복적인 행동, 적절한 행위의 결핍	-Action on Elder Abuse: 신체적 학대, 성 학대, 심리적 학대, 재정적 학대, 방임으로 규정
일본	-고령자 안전보호에 관한 조사연구 사업 보고서: 배우자, 자녀, 형제, 친구, 보호제공자 등 노인과 특별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에 의하여 노인의 자택 혹은 보호제공자의 거주지에서 행하여지는 학대"로 정의	-서포트 라인: 학대의 유형을 신체적 학대, 정서/심리적 학대, 금전적/물질적 학대, 성 학대, 방임, 감금 등으로 분류

자료: 이연호. (2002). 노인학대 위험요인과 피해

한국의 노인학대 개념은 학자들의 다양한 연구와 관련기관 등의 개념 정의 과정을 거쳐 현재는 개정된 노인복지법에서 노인학대의 개념을 규정하여 단일화 과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며 노인학대 상담센터 등에서 그 개념을 정의하여 실무와 개입에 활용의 폭을 넓히고 있다.

개정된 노인복지법에서는 "노인학대라 함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노인복지법 제 1조의 2)고 정의한다. 학대유형에 대한 설명은 금지행위(제 39조의 9)를 통해 구체적으로 노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 성희롱 등의 행위,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노인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행위, 노인에게 구걸을 하게하거나 노인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노인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로 규정한다.

노인학대 상담센터의 노인학대는 크게 가정 내 노인학대와 시설노인학대 두 개의 범주로 구분된다. 가정 내 노인학대란 “노인과 동일가구에서 생활하는 노인의 가족구성원인 배우자, 성인자녀, 그리고 기타부양자나 친척에 의하여 행해지는 신체적 또는 정서적 학대, 재정적 착취 및 방임과 노인자신에 의한 방임을 말한다.” 학대의 유형은 신체적 학대, 심리/정서적 학대, 재정적/물질적 착취, 방임, 자기방임, 유기, 그리고 기본적 인권의 침해를 포함하는 진보적 의미에서 학대유형을 포함하고 있다. 노인학대 상담센터의 학대정의는 실무와 개입의 용이성을 위하여 보다 진보된 개념으로 노인의 자기방임을 포함하고 있으며 동시에 노인학대 예방적 측면에서 중요한 기본적 인권의 침해까지 폭넓게 다루고 있다(노인학대상담센터, 2004: 146).

선진국과 한국의 노인학대의 개념과 유형을 볼 때 현시점의 노인학대의 개념은 노인학대를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노인에게 해를 가하는 개념의 소극적 전제에서 벗어나 노인의 인권과 보장을 전제로 하는 적극적인 넓은 범주로 합의된다. 가정 내 노인학대의 개념을 방임을 포함하는 진보된 의미에서 규정하면 “노인과 동일가구에서 생활하고 있는 노인의 가족구성원인 배우자, 성인자녀, 그리고 기타 부양자나 친척에 의하여 행해지는 신체적, 정서적, 재정적 착취 및 방임과 노인자신에 의한 방임, 즉 자기방임을 말한다.”

학대의 유형은 신체적 학대, 정신적/심리적 학대, 성적학대, 경제적 학대, 유기, 방임 등의 유형을 폭넓게 포함한다. 신체적 학대 (Physical Abuse) 노인에게 신체적 손상, 고통, 혹은 장애를 유발시킬 수 있는 힘에 의한 학대를 말한다. 심리, 정서적 학대 (Emotional/Psychological Abuse) 비난, 모욕, 위협, 협박 등의 언어적 혹은 비언어적 행위를 통하여 노인에게 심리적 고통을 주는 것을 의미한다. 재정적/물질적 착취 (Financial/Material Exploitation) 노인의 자산을 불법적으로 사용하거나 부당하게 착취하는 것을 의미한다. 방임 (Neglect)은 노인의 의식주 문제해결 등과 같은 부양자로서의 책임이나 의무를 의도적/ 비의도적으로 박탈하는 것이며 자기방임 (Self-neglect)은 노인이 자신의 건강이나 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조처를 취하지 않거나 자신의 건강이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설명한다. 유기는 비독립적인 노인을 격리하거나 방치하는 행위이다. 기본적 인권의 침해란 자유, 의료, 개인자산의 활용, 종교, 투표, 존엄한 인격체로 대우받을 권리 등에 대한 침해를 포괄적으로 포함한다.

Ⅲ. 노인학대 관련 이론

한국을 포함한 각 국의 노인학대의 법제화는 상당부분 노인학대를 가정폭력관점에

서 조망하고 대처하며 진전되어왔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노인학대를 가정폭력의 관점에서 조망하는 이론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다. 노인학대를 설명하는 다양한 이론과 모델이 존재하나 가정폭력 관점에서의 주요 이론 및 모델은 다음과 같다.

1. 생태학적 접근 이론

가정폭력으로서의 학대의 연구는 보다 통일된 방법으로 가족구성원에 의한 학대를 이해하고 다양한 상호관계에 관심을 갖게 되면서 생태학적 접근 이론을 제안하게 된다(Kemp, 2000). 즉 생태학적 이론에서의 '환경 속의 인간'이라는 총체적 인간관은 유기체를 환경과 분리할 수 없고 상호 작용하는 체계로 보기 때문에 개인과 환경을 이분화 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으며 양자간의 상호작용에 초점을 둘 수 있게 해준다.

전반적으로 가족구성원에 의한 학대를 가장 잘 설명하는 것으로 알려진 생태학적 모델중의 하나는 Belsky(1980)가 채택한 모델이다. 이 체계는 가정 내 학대와 관여되는 4단계 즉 개체 발생론적 수준, 미시체계수준, 외적체계 수준, 거시체계수준으로 조직화된다. 가해자의 개인적 요소는 개체 발생론적 수준에서 형성되며 외적 체계는 사람들에게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관계로 구성된다. 또한 거시체계는 모든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 다른 수준을 포함한다(이화여자대학교 사회사업연구회 역, 2001). 이런 생태학적 접근이론에 근거한 노인학대 모델은(Schiamberg & Gans, 1999; Kemp, 2000) Bronfenbrenner(1979, 1986, 1997)의 생태학적 모델과 생활주기모델(Life Course Perspective)을 기반으로 발전된 것으로 가족 내 성인자녀에 의한 노인학대를 조명하며 학대 위험요인과 가족 내 세대간 특질을 설명하는 관계상황 구조를 제시한다. 이 모델에서는 구체적인 위험요인인 피해자인 노부모 특질, 가해자인 성인자녀의 특질, 노부모와 성인자녀와의 상호작용, 성인자녀의 중간체계, 노부모의 중간체계(Exosystem/ Mezosystem)와 이를 둘러싸고 있는 거시체계 등이 상호영향을 미친다. 이 모델은 가정폭력으로서 노인학대를 개인, 관계, 사회적 맥락에서 설명하며 노인학대를 사회적 이슈로 접목시키는 장점을 갖는다.

이 모델이 제시하고 있는 구체적인 위험요인을 체계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노인-피해자의 특질은 노인- 피해자 위험요인이다. 구체적 요인으로 성, 연령, 결혼상태, 건강상태, 치매 등 인지장애, 자극적/공격적 행동, 약물남용, 심리적 요인(비관, 우울, 자기비하 등), 사회적 고립이 제시되었다. 성인자녀-가해적 부양자 특질은 가해자 위험요인으로 약물남용, 정신장애, 치매 등 인지장애, 부양경험의 부족, 부양역할에 대한 저항, 스트레스와 부담, 성격적 특질(인내심의 부족, 비현실적인 부양기대, 우울, 반사회적 행동, 불안정성 등), 사회적 지원의 부족 등을 포함한다. 미시체계(Microsystem)

는 가족 및 세대간의 시간성과 사건을 설명하는 것으로 가족의 의사결정 패턴, 가족 발달상의 과업, 의존, 생활환경, 가족 내 학대역사, 폭력행동의 세대간 전이, 세대차이 및 다세대간의 욕구 등 이다. 미시체계를 포함하는 중간체계(Exosystem/ Mezosystem)는 구체적으로 가족과 다른 중요한 세팅 즉 공식/비공식 지원, 재정적 자원을 말하며 직장, 사회적 관계망과 같은 가족의 발달에 영향을 주는 외부환경을 포괄한다. 성인자녀/노인의 중간체계는 고용상태와 재정자원, 사회적 고립, 공식적 지지의 부족을 제시하며 사회적 고립과 공식적 지원의 부족이 주요요인이다. 마지막으로 미시체계와 중간체계를 포함하는 거시체계에서는 사회의 가치를 언급하게 되는데 문화를 반영하는 사회적 가치는 특히 노인학대 이해에 중요하며 구체적으로 문화 규범, 공공정책 등이 위험요인으로 제시되었다.

2. 가정폭력접근 이론

배우자학대 및 구타, 자녀학대 등을 위주로 발전되어온 가정폭력은 현재는 가족 구성원 사이에서 발생하는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한다. 따라서 가정 폭력은 동거가족 뿐 아니라 같은 가구에서 생활하는 모든 근친 가족 구성원들 간의 물리적, 정신적 폭력행위를 망라하는 총체적 개념으로 인식된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김승권 외, 1998). 가정폭력은 발생배경부터 내적 특성 및 사회적으로 구성되는 의미에 이르기까지 일반폭력과는 구별되는 성격을 갖기 때문에 가정폭력을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가해자와 관계, 자원, 사회의 규범 등을 고려해야 하며 또한 피해자 입장에서 행위의 원천, 상황 등을 동시에 고려하는 단편적인 시각보다는 총체적인 입장에서 평가, 해석하는 통시적이고 종합적인 시각이 요구된다.

비교적 연구가 진전되어온 가정폭력은 다양한 이론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보편적으로 기존 가정폭력연구에 활용된 이론들은 개인적 관점, 사회적 관점, 사회 심리적 관점, 그리고 사회구조적 관점으로 분류된다. 개인 내적 관점은 정신병리학적 접근, 성격적 특성론, 피해자 유발론 등을 기초로 설명되며 사회 심리적 관점은 사회학습이론, 좌절-공격이론, 스트레스 이론에서 주로 설명된다. 사회구조적 관점은 자원-교환이론, 성 역할 이론, 가부장제이론, 하위문화 이론 등을 주축으로 한다. 여기에 이 세 가지 관점은 모두 가해자 중심의 편향적 시각으로 이론적 전개를 유추하고 있다는 점에서 논리의 객관성이 미약하다는 비판 아래 피해자 관점의 가정폭력이론의 절충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김승권 외, 1998; 이연호 2002 재인용).

본 고에서는 가정폭력 접근이론을 근거로 한 노인학대 모델 중 부양을 근거로 한

노인학대 모델, 배우자학대를 근거로 한 노인학대 모델, 그리고 전반적인 가정폭력 이론을 통합적 관점에서 본 노인학대 모델을 설명하고자 한다. 먼저, 부양을 근거로 한 노인학대 모델(Anetzberger, 2000)은 노인학대를 인지, 문제, 정신병리, 노인의 질병/장애에 대한 공감의 부족 등의 가해자 특질과 피해자 특질에서 설명한다. 부양 자체가 학대의 원인은 아니며 피해자와 가해자가 함께 하는 관계상황이 강조된다. 이 모델에서 부양은 피해자-가해자 상호작용 상황이 되며 부양과 관련된 학대를 유발하는 특별한 역동성이 제시된다.

배우자 학대를 근거로 한 모델은 내적 관계 이론(Intra- Interpersonal Thoery), 사회 스트레스모델(Social Stress Model), 배우자 학대 상황 모델(Situational Model of Spouse Abuse), 가족폭력 모델(Family Violence Model) 등을 근거로 형성되었다. 구체적 변인으로는 연령, 성별, 교육정도, 종교, 인종, 가구수입 등의 인구사회학적 변인; 저소득, 소수민족, 실직, 지위변동, 고립, 주거 등의 사회적 요인; 약물의존, 자존심의 저하, 가해자의 병리, 신체적 기능 등의 개인 내적 요인; 언어 폭력, 부부간 불화 등이 제시된다. 이런 위험요인은 권력구조, 의존성, 종교, 폭력의 세대간 전이, 문화적 폭력성, 연령, 교육수준 등의 조절변인의 영향을 받으며 언어적, 신체적, 성적 영역의 노년기 배우자학대를 유발한다. 학대는 결과적으로 우울, 자살기도, 수치심, 무기력, 약물의존, 신체화 현상, 자존감의 저하 등의 심리적 문제와 수동성, 수용, 관계의 단절, 대항, 신체적 질병 등의 피해를 초래한다.

가정폭력에 근거한 통합적 시각의 노인학대 모델(Anetzberger, 1997)은 가정폭력으로서 노인학대를 조망한다. 노인학대 피해자를 설명하며 특히 사회, 문화적 영향을 강조한다. 이 모델에서는 2종류의 시간체계가 고려되는데 하나는 생애 초기에 학대를 겪은 노인 피해자들이며 다른 하나는 노년기에 학대를 당한 피해자이다. 특히 노년기 학대를 당한 피해노인들에 대한 학대의 영향의 경로를 제시하고 있어 학대피해영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설명이 가능하다. 가정폭력모델이 제시하는 실제적인 모형은 크게 원인요인, 조절/매개 요인, 그리고 결과요인으로 구분된다. 이런 모든 요인들이 역동적 영향을 미쳐 나타나는 학대의 결과의 주요영향은 신체적, 심리적, 행동적, 사회적 피해영역으로 분류된다. 신체적인 피해영역에서는 수면장애, 섭식장애, 두통 등의 증상이 나타나며 심리적 피해영역에서는 부인, 공포, 두려움, 불안, 당황, 자기비난, 절망, 해리 등의 증후가 나타난다. 정신적 착각, 분노, 자살충동, 무력감, 대처능력의 감소 등의 행동증상이 나타나며 사회적으로는 사회적 접촉의 감소, 폭력행동, 의존, 철회 등이 나타난다.

Ⅲ. 노인학대 관련 법률

현재 노인학대와 관련된 법률은 상당부분 확대되어지고 있는 상황으로 노인학대와 관련된 법으로는 형사 및 형사 특별법, 가정폭력에 관한 법률의 보호, 그리고 노인복지법 등 사회복지 관련법에 의한 보호로 나누어 볼 수 있다.

1. 형사 및 형사특별법

형법상의 존속규정은 헌법상의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위헌과 합헌의 논란이 있으나 현재까지는 합헌으로 인정되고 있으며 노인에 대한 가장 중요한 생명, 신체의 보호규정으로 작용하고 있다. 학대와 관련된 내용으로는 노인에 대하여 상해, 폭행, 유기, 학대, 체포, 감금, 협박, 명예훼손, 모욕 주거/신체수색, 강요, 공갈, 재물손괴 등의 행위를 하면 형법의 각 조항에 의해 처벌되어진다. 또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의해 집단, 상습, 야간인 경우 가중 처벌된다.

2. 가정폭력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호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은 가정폭력에 대하여 형사처벌 절차에 대한 특례절차를 정하고 가정폭력 범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환경의 조정과 성행의 교정을 위한 보호처분을 행함으로서 피해자와 가족구성원의 인권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제 1조). 가정폭력을 가족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재산적 손해를 수반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형법상 폭행, 상해, 유기, 학대, 체포, 감금, 협박, 강요, 공갈, 명예훼손, 아동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아동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를 포함한다(제 2조 3호). 판사의 심리결과 보호처분이 가능하며(제 40조) 가정폭력범죄에는 이법을 우선 적용한다(제 3조).

자녀가 부모를 폭행하거나 상해하면 존속범죄로 가중처벌을 받도록 형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이런 행위가 가정 내에서 발생하면 가정폭력사건이 되고 형법의 적용은 배제된다. 현재 한국에서 노인학대와 가장 관련이 큰 법률은 1998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가정폭력 방지법이다. 이 법에 근거하여 노인이 가정 내에서 학대를 받게 되는 경우 신고나 고소가 가능하다. 그러나 가정폭력방지법은 가정폭력 사건을 가정보호사건으로 특별 심리를 하므로 형벌에 앞서 보호처분을 내릴 수 있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한 노인은 성인이므로 '의사존중의 원칙'으로 인하여 노인스스로 학대사실을

인정하고 수사 및 형사처벌을 요구해야만 처벌이 가능하다. 이런 현실적 제한점 때문에 노인학대 문제를 범법이나 형사법적 영역으로 국한 짓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3. 노인복지법 등 사회복지 관련법에 의한 보호

노인에 대한 다양한 규율하기 위해 2004. 1. 노인복지법 개정시 노인학대에 관한 규정을 대거 도입하였다. 노인복지법(2004. 7. 30)의 주요내용을 보면 노인학대의 정의를 규정하였고(제 1조의 2), 그 외 긴급전화의 설치(제 39조의 4) 및 노인보호 전문기관의 설치(39조의 5), 의무신고와 절차(제 39조의 6), 응급조치의 의무(제 39조의 7), 금지 규정 및 처벌(제 39조의 9) 등이다. 그 외 사회복지 관련법으로는 노인의 경우 신체적으로 장애를 수반하는 경우 장애인 복지법 등이 노인의 보호체계로 작동 할 수 있다. 그러나 현행 장애인복지 법은 장애인으로 등록하지 않은 경우 법의 적용을 받기가 쉽지 않다는 제한점을 가진다.

노인학대에서 가장 중요한 개입 시점이 되는 노인격리, 보호 관련법 규정을 보면 다음 <표 2>와 같다.

<표 2> 노인격리, 보호 관련 법규정

법	내 용	비 고
노인 복지법	노인주거시설, 재가복지시설에 입소 (제 28조 제1항 제2호)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 이유 또는 환경상의 이유로 거택에서 보호받기가 곤란할 때
	노인의료복지시설에 입소 (제 28조 제 1항 제 3호)	신체 또는 정신상의 현저한 결함으로 항상 보호를 필요로 하고 경제적 이유로 거택에서 보호받기 곤란할 때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의료기관 인도 (제 39의 7 제 2항)	노인학대 현장에 출동한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이나 사법경찰관리가 치료가 필요할 시 인도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가해자와 분리하여 가정폭력관련 상담소, 보호시설, 의료기관에 인도 (제 5조 제 1, 2, 3호)	진행 중인 가정폭력 범죄현장에 출동한 사법경찰관리가 인도
	노인학대사례를 경찰에서 수사하거나 법원에서 심리가 진행 중일 때 피해자의 보호를 위해 격리가능 (제 29조 제 1항)	가해자를 피해자가 주거, 점유하는 방실로부터 퇴거 등 격리, 의료기관 기타 요양소에 위탁, 경찰관서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유치
	6개월간의 '학대행위다의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사회봉사, 수강명령, 상담위탁 등 (제 40조 제 1항)	최장 1년간 격리가능 (제 45조 제 1항)

자료 : 이금형. (2005). 노인격리, 보호 관련 법규정, 법적 대응 및 절차.

Ⅳ. 노인학대에 관한 제도적 개입의 필요성 및 확대

1. 노인학대에 대한 제도적 개입의 필요성

노인복지법 개정으로 노인학대를 제재하는 의미는 노인학대를 국가적으로 예방하고 방지하기 위해 국가의 예산편성과 개입근거를 마련해줌과 아울러 국가에게 적극적으로 노인학대를 방지할 의무를 부과하는 의미가 있다. 또한 관련 공무원을 비롯한 노인복지담당 실무자에게 조사권, 격리의무, 등의 권한과 의무를 동시에 제공하여 노인학대 사례에 대한 적절한 개입을 하지 않는 경우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근거가 될 것이다. 그리고 피학대 노인의 경우 긴급전화, 보호시설 입소, 등 보호를 요청할 수 있는 다양한 네트워크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이다. 행위자에 대해서는 형법 혹은 가정폭력 방지 등에 관한 특례법이 규율할 수 없는 방임 등의 행위도 처벌할 수 있게 되고 시설장 등의 보호자가 자행하는 노인학대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도 될 것이다(정은숙, 2005).

이전 관련법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노인학대에 관한 내용을 명시하고는 있었으나 노인학대에 관련된 독립된 법이 부재하여 학대사례 개입 적용에 제한점이 컸던 것이 사실이다. 노인학대 상담센터에 상담의뢰가 들어온 경우 신체적 학대로 인한 명백한 증거가 있지 않는 이상, 혹은 있더라도 노인학대 상담센터에서 주로 이루어지는 중재개입에는 관련 법제에 근거한 구속력 및 강제성을 전혀 가지지 못했다. 명백하게 노인이 학대를 당하는 상황임에도 가해자가 상담 센터 상담에 응하지 않는 경우, 또한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을 경우 개입이 용이하지 않았으며 피해자인 노인이 방치된 채 상담을 보류하게 되는 사례가 많았다. 무엇보다 노인학대 관련 법제화로 학대 개입의 시초가 될 수 있는 강제 조사권, 노인학대가해자에 대한 처벌의 강제성과 구속력 등이 시급히 요구되었으며 학대 유형 중 존속 폭행, 상해와 같은 중증의 학대가 아니라 노인학대 상담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부양기피, 방임, 유기 등의 학대에 대한 법적 근거의 마련도 시급히 요구되었다.

현 상황에서 일부 학대 피해자들은 보복이 두렵거나, 가족을 떠나 시설에 입소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으로 학대노출을 꺼리며 주위의 가족이나 이웃들도 여러 가지 이유로 신고를 기피하고 있다. 학대사례로 판명된 경우에도 단기보호시설, 쉼터, 노인수용시설의 입소절차를 간소화하고 우선입소의 배려를 법적으로 명시하여 격리가 필요한 노인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타 노인복지관련기관, 시설에서의 학대의 위기성, 위급성을 인식하고 이를 우선적으로 취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면 신체적, 정신적으로 약한 상태에서 학대라는 위기상황에 직면한 노

인들의 생명과 안전의 보호가 용이해질 것이다.

또한 노인학대 상담센터 전문상담원의 확보 및 양성을 위해서는 노인학대 상담센터에 대한 입법화를 통해 자격 및 제반 권리와 의무, 처우 등의 규정을 제정하여 양질의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해야 한다. 특히 학대가정 현장 조사 시 상담원의 법적 신분 보장이 확보되지 않아 위험한 상황에 노출되어 있는 상황이므로 상담원의 안전 확보, 보호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 개정된 노인복지법 중 상담원 등에 대한 규정이 포함되어 앞으로 인력충원과 전문성의 확보의 근거가 마련되었으나 그 자격과 권한이 보다 강화되어져야 효과적 개입이 가능 할 것으로 보인다.

노인은 친권자 혹은 후견인이 그 권리를 대신하는 아동과 달리 법률적으로 완전한 권리의무의 주체이다. 따라서 자신에게 가해진 피해에 대한 민, 형사상의 모든 권리를 독자적으로 행사할 수 있고 행사하여야 한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치매 및 와상노인의 경우 권리행사가 불가능하고 그 외에도 노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물리적, 심리적으로 권리행사에 많은 제한을 받게 된다. 따라서 국가가 후견인적 태도로 노인들의 권리를 보호할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한 법률적인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필수적인 과정이다(정은숙, 2003).

2. 노인학대 법제화 과정 및 주요내용

그동안 추진되어온 노인복지법 중 개정 법률안의 제안이유는 노인학대를 방지하고 학대받는 노인을 보호할 수 있도록 긴급전화 및 노인보호전문기관을 설치하고 노인학대에 대한 신고의무와 조치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노인학대 행위에 해당하는 일정한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자나 경우를 처벌하려는 것 이었다. 노인학대 상담센터 전문위원회에서는 노인학대에 대한 법제화를 위해 노인복지법 개정(안)을 위하여 관계자와의 회의, 국회 및 보건복지부로 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전달하는 등 적극적인 활동을 펼쳤으며, 노인학대의 사회적 이슈화 및 노인학대 법제화를 위하여 2003년 11월 토론회를 개최하여 노인학대의 법제화의 필요성을 촉구하였다. 다행히 2003년 5월 16일 김홍신 의원을 대표로하여 국회의원 10인이 노인복지법 중 개정법률(안)을 공동으로 발의하여 2003년 12월 29일 노인복지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었다.

개정된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노인학대 등 이 법에서 사용하는 기본적인 용어에 대한 정의규정을 신설하였다(안 제 1조의 2 신설). 둘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노인학대를 예방하고 수시로 노인학대를 신고 받을 수 있도록 긴급한 전화를 설치하도록 하였다(안 제 39조의 4 신설). 셋째, 국가와 지방자치 단체가 노인학

대의 예방, 발견, 보호 등을 전담하는 노인보호전문기관을 설치하도록 하였다(안 제 39조의 5 신설). 넷째, 누구든지 노인학대를 발견했을 시 이를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직무상 노인학대를 알게 된 일정한 자에게는 신고를 의무화 하였다(안 제 39조의 6 신설).

다섯째, 노인학대 신고를 접수한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이나 사법경찰관리는 현장 출동 등 응급조치를 하도록 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등이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안 제 39조의 7 및 제 39조의 10 신설). 여섯째, 노인학대 행위에 해당하는 일정한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그 행위유형에 따라 처벌하도록 규정하였다(안 제 39조의 9 및 제 55조의 2 내지 제 55조의 4 신설). 일곱째, 학대노인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자에 대하여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다(안 제 39조의 11 및 제 57조 제 2호 신설).

노인학대를 국가적으로 예방하고 개입하겠다는 방향의 노인복지개정법은 국가에 대해서는 노인학대에 관한 예산편성과 개입근거를 마련해줌과 아울러 다각적으로 방법을 모색할 의무를 부과하는데 의미가 있다. 또한 관련 공무원을 비롯한 복지 담당실무자에게는 조사권, 격리의무 등의 권한과 의무를 동시에 제공하여 노인학대 사례에 대해 적절한 개입을 하지 않을 경우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근거가 될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사회복지에 관한 여러 법이 장식적인 수준의 기능에 머무른 채 실효성 있는 법으로 기능하지 못해왔다. 노인학대에 대한 국가개입의 근거를 마련한 노인복지개정은 학대받는 노인에 대한 보호를 제공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법이 되어야 할 것 이다(정은숙, 2003).

Ⅴ. 논의 : 노인학대의 제도적 개입 전략

노인학대 문제는 이제 더 이상 간과할 문제도 노출되기 어려운 시대적 상황도 아니다. 노인학대와 관련된 다양한 방면의 조사와 연구들이 진행되어 학대의 실태와 심각성이 꾸준히 알려져 왔으며 이에 대한 제도적 대책과 실천적 개입이 시급히 촉구되고 있다. 현재 노인학대와 관련된 제도적 대응을 근거로 한국 노인학대의 제도적 개입 전략의 나아갈 향방을 몇 가지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노인학대의 법적, 제도적 개입이나 전략이 노인학대에 대한 사회적 인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측면의 중요성이다. 정책적, 제도적 대응에 앞서 노인학대 문제가 더 이상 노인학대를 가정 사나 집안일로 인식하는 차원에서 벗어나 사회구조적 원인

에 기인하는 문제라는데 합의하고 그 대응을 시급히 모색해야한다는 노인학대의 사회문제화로 인식을 전환하는데 기여해야할 것이다.

더불어 한국노인의 최소한 인간 기본권을 보호하는, 노인들이 학대와 방임과 착취의 피해자로서 방치되어서는 안된다 에 초점을 둔 사회운동을 전개해야 한다. 노인학대 문제는 사회전반의 문제의식과 협력의지 없이 노인복지전문가들의 노력만으로는 풀 수 없는 숙제이다. 그동안 노인학대 문제에 관심을 가져온 전문기관 및 단체뿐 아니라 이 문제해결에 공감하거나 동참할 수 있는 모든 시민사회단체들의 협력과 함께 다양한 노인학대 및 착취 사례들을 사용하여 적극적으로 언론과 지역사회단체를 통한 홍보의 기회를 동원하고 노인들이 안전하고 학대와 착취로부터 보호 및 인권을 보장받는 사회로 만드는 사회운동이 필요하다. 노인학대의 법제화를 근거로 하는 제도적 개입은 현실 부정적인 안이한 태도를 가진 정책결정자들과 언론인, 일반 시민들의 인식을 바꾸고 협력자로 만드는 작업 또한 중요하다(문애리, 2002).

둘째, 노인학대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기위해서는 노인학대의 실상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즉 노인학대에 대한 사회적 대응은 노인학대의 실상을 정확히 파악한 이후에 가능하다(우국희, 2003). 아직 전국적 규모의 학대실태조사가 실시되지 못해 정확한 실태파악이 어려운 상황에서 법제화가 진행되었음이 시사하는 바는 노인학대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현상으로 간주될 수도 있다. 노인학대의 실제적 개입이 사후약방문식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전문적 개입으로 실효를 보려면 정확한 실태조사와 이를 바탕으로 한 인식의 전환, 그리고 장기적 목적의 예방교육이 선행되어져야할 것이다.

셋째, 현재 한국의 노인학대는 개정된 노인복지법, 노인학대 상담센터 등의 정의를 통해 볼 때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하는 것으로 개념이 합의되어지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 이는 선진국의 학대개념의 흐름으로 볼 때 초기 소극적 학대 개념에 가깝다고 판단된다. 다음, 학대유형은 신체적 학대, 정신적/심리적 학대, 성 학대, 경제적 학대, 유기, 방임 등의 유형을 포함한다. 개정된 노인복지법의 경우 선진국의 학대유형인 성학대 등을 포함하고 있으나 논쟁점이 되고 있는 자기방임 유형이 제외되어있다. 학대가해자에 대한 처벌이나 개입이 학대의 법적 개념규정과 긴밀한 관련이 있음을 볼 때 학대의 개념이 좀더 적극적이고 진보적인 개념으로 인식되어져야 할 것이며 학대유형도 자기 방임, 기본적 인권의 침해 등 다양한 유형이 폭넓게 포함되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 노인학대의 제도적 개입의 진전은 궁극적으로 학대피해노인과 가해가족구성원의 복지를 동시에 증진시키는 역할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노인학대 사

례에서의 상담자는 신고, 고발의 주체가 될 수 있고 보조인, 동석자가 될 수 있으며 , 가해자를 처벌하기 위한 증거를 확보할 수 있으며, 참고인, 법정증인, 가족치료 및 가해자에 대한 개입 등에서 주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상담자는 수사기관이나 사법기관과 달리 가해자에 대한 처벌보다는 피해자의 보호와 피해자에 대한 치료, 지지 등을 충분히 제공하여 피해자에 대한 원조와 가해자를 변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동시에 이미 서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학대 노출에 효과가 있는 강제보고 법령의 실행이 요구된다. 특히 심각한 가정폭력과 관련된 노인학대의 경우 가해자를 피해자로부터 신속히 분리시킬 수 있는 보호관찰과 같은 자유재량권 등이 확대되어져야 하며 노인이 합리적 결정을 할 수 있는 능력이 결여 된 경우 대리인, 후견인 등 공평한 입장의 제3자에게 권리를 부여하도록 하는 변호/대리프로그램(Advocate Program)이 요구된다. 학대노인을 위한 법적 조치의 강화는 특히 부모에게 경제적 의존도가 큰 자녀들로부터 재정적 학대를 당하는 한국의 노인들에게 적절한 개입으로 보인다.

넷째, 노인학대 개입의 통합적 접근과 서비스의 연계의 필요성과 협력이다. 노인학대와 관련된 개입은 매우 포괄적이어서 대부분의 경우 한 기관에 의해 독자적으로 해결책이 마련되기 어려운 분야이다. 또한 노인학대의 피해자나 가해자 혹은 가족이 가지는 욕구는 복합적이어서 활용 가능한 자원을 파악하고 자원의 다양한 제공주체 혹은 서비스 기관 간의 연계, 협력은 조절하는 팀워크가 절대 필수적이라 하겠다(김선자, 2005). 노인학대, 방임, 착취의 피해자와 가해자가 필요로 하는 다양하고 전문적인 서비스를 포괄적으로 모두 제공할 수 있는 기관들이 단시일 내에 많이 설립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다. 미국에서의 경험과 같이 연계협력과 사례관리의 전문성 등이 중심이 되어야 할 것이다. 여러 영역이 함께 문제해결에 참여하는 다학제간 접근(multidisciplinary approach/MDT)을 요구하는 노인학대 사례들에 효과적으로 개입하기 위해서는 미리 여러 기관과 협정체결을 하고 또 필요한 경우 예산의 책정도 미리 계획되어야 할 것이다. 노인을 접촉하는 다양한 기관의 직원들이 노인학대 예방과 조기발견을 위한 훈련도 정기적으로 받아야 할 것이다(문애리, 2002).

다섯째, 노인학대 전문인력 양성 및 훈련에 관한 부분이다. 노인학대에 대한 법적 대응이 상당한 진전을 보이고 있으나 현재는 주류의 흐름을 이루고 있어 상대적으로 제한된 부분이 존재한다.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홍보 및 노인을 접촉하는 많은 기관들을 대상으로 한 노인학대 기본지식 교육 및 훈련을 전담하는 전문가는 물론 노인학대, 방임 및 착취를 신고 받고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사례평가와 개입계획을 세울 수 있는 전문 인력의 양성 및 훈련이 이루어져야 하겠다.

마지막으로 그 동안 학계, 전문가, 그리고 노인학대 상담센터 등 민간기관을 중심으

로 이루어진 제도적 대응 개선의 노력을 통해 노인복지법이 개정되어 학대에 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고 이를 근거로 어려운 현실적 여건 속에서도 실천적 개입이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다. 현재 한국 노인학대 제도적 개입수준의 제한점은 여러 영역에서 찾아볼 수 있으나 가장 시급한 문제 중 하나는 피해 노인과 가족을 직접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자원과 서비스가 충분히 개발되어져야 하며 반드시 실천적 개입의 내실화를 가져와야 한다. 즉, 피해 노인과 가족을 직접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자원과 프로그램 및 서비스의 충분한 개발과 연결되어져야 할 것이다.

우선, 노인학대 상담센터, 노인복지 기관의 학대사례 조사, 발굴에 대한 능력을 증대시키고 복지관 등에서 신속히 학대를 사정하도록 하는 사정도구 개발이 시급하다. 이런 도구의 활용은 전문가들이 신속하게 학대에 대응하고 개입하기 위한 첫 단계에서 시행착오를 줄이고 시간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다음, 학대 발생 후 피해노인들은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국가, 종교단체 등의 원조로 생존하기 쉽다. 공식적, 비공식적 지원의 강화, 사회적 지원의 강화, 외부접촉의 강화 등 궁극적으로 사회적 관계망의 확대는 학대노인의 고립연결고리를 끊어내는 기능을 하여 학대를 방지, 감소시킬 것이다. 즉 노인의 의존성 감소, 사회적 지원의 증대를 목적으로 현재 노인들이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학대노인들에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요구된다. 필요시 신속하게 제공되는 서비스는 학대의 피해를 감소시킬 수 있으며 가족이 가해자인 경우 사회적 비난이나 부담을 줄여준다. 구체적인 신속원조 서비스로는 가사원조 서비스, 위급 식량 지급, 식사배달 서비스, 학대로 인한 질병 및 증상 치료, 가옥 복구 및 수리, 기타 가정용품 지급 등이 있다. 또한 노인이 서비스제공기관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아웃리치 프로그램이 효과적이다. 구체적으로 상담, 잠재적 학대 자에 대한 관리, 지역사회 서비스 조정, 사례관리 등이 실행되며 접근성이 높은 노인들로 자조집단을 활용한다면 학대피해 노인들의 심리, 사회적 디스트레스를 감소시킬 수 있다.

가족개입 서비스 또한 현실적 개입에서 시급히 요구되는 부분이다. 구체적으로 사회구조적 문제로 학대가 발생하는 경우 가족들에게 요양보험, 부양보험 등의 제도와 수당 등을 통하여 경제적 지원을 하는 한편 부양자를 위한 가사지원 서비스, 간병 서비스, 스트레스를 받는 부양자에게 휴식을 제공하는 장/단기보호서비스 등이 필요하다. 또한 전혀 실행되지 못하고 있는 측면으로 가해자 원조프로그램이 개발되어져야 한다. 학대 피해 노인 뿐 아니라 학대 가해자들을 위한 개입프로그램이 시행된다면 학대의 감소 뿐 아니라 노인이 다시 가정으로 돌아갈 경우 학대 재발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또한 모든 가해자에 대한 치료와 상담 역시 법적인 구속력과 재정적 뒤받침이 되어야 한다.

한국 노인학대 법적, 제도적 개입은 이제 시작단계로 보인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법제정에 있어 중요한 것은 법제정과 함께 법을 집행할 수 있도록 홍보, 교육 및 기본 프로그램 시행을 위한 예산이 책정되어야 하는 점이다. 이는 명목상의 법이 아니라 구속력이 있고 행정력이 뒷받침되어야 하는 실효성이 있는 법이 되기 위해서이다. 한국 노인학대의 제도적 개입이 효과적 전략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개입노력뿐 아니라 학대와 관련된 모든 분야 및 관련 인력들이 협력하는 자세가 무엇보다도 요구된다.

참 고 문 헌

김승권, 조애저. (1998). 「한국가정폭력의 개념정립과 실태에 관한 연구」. 한국보건사회 연구원.

김선자. (2005). 노인학대의 통합적 접근. 「노인학대전문상담원 과정」.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보건복지부. 161-170.

문애리. (2002). 노인학대 문제에 대한 미국의 제도적 접근방식과 한국사회에의 함의, 노인학대 제도적 및 실천적 개입전략 -미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노인학대 워크샵」. 까리따스 방배종합사회복지관. 5-17.

박봉길. (2000). 「노인학대 인식도 분석을 통한 사회사업 원조전략」. 부산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과 박사학위 논문

서윤. (2001). 「노인학대의 개요와 대처방법」. 2001년 전국노인학대 예방 상담센터실무자 교육강의자료.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우국희. (2001). 노인학대 관련정책 개발을 위한 일 고찰. 미국의 노인학대 관련법과 서비스정책을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 44호.

우국희. (2003). 「노인학대 예방과 개입을 위한 토론회」. 노인학대 상담센터 전문위원회. 55-57.

이금형. (2005). 법적대응 및 절차 1: 노인학대 상담에 필요한 법률적 내용, 「노인학대 전문상담원 과정」. 한국보건복지 인력개발원, 보건복지부. 184-192.

이선자. (2002). 미국의 노인학대-자원과 개입모델을 중심으로-. 노인학대 제도적 및 실천적 개입전략-미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노인학대 워크샵」. 까리따스 방배종합사회복지관. 19-38.

이연호. (2001). 선진국 노인학대 지원제도 및 프로그램 비교연구. 「노인복지연구」. 14 호. 165-192.

이연호. (2002). 「노인학대 위험 요인과 피해에 관한연구」. 이화여대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이연호. (2003). 한국에서의 노인학대 개입수준 및 제한점. 「노인학대 예방과 개입을 위한 토론회」. 노인학대 상담센터 전문위원회. 6-16.

정은숙. (2003). 노인학대 예방과 개입을 위한 노인복지법 개정안에 대한 검토. 「노인학대 예방과 개입을 위한 토론회」. 노인학대 상담센터 전문위원회. 58-66.

정은숙. (2005). 법적대응 및 절차 1: 노인학대 상담에 필요한 법률적 내용, 「노인학대 전문상담원 과정」. 한국보건복지 인력개발원. 보건복지부. 147-154.

조애정, 김승권, 김유경. (1999). 「노부모 학대실태에 관한 사례연구」. 보건사회연구원.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9). 「노인의 범죄 및 범죄피해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사회사업연구회 편역. (2001). 「가족학대, 가족폭력」. 서울:나남출판.

이화여자대학교 사회사업연구회 편역. (2003). 「가족폭력-사정과 실제」. 서울:양서원.

노인학대 상담센터. (2003). 「노인학대 상담센터 2003년 사업보고 및 사례집」.

한국 재가노인복지회. (2002). 노인학대예방센터 사업보고 및 상담사례집. 「재가노인복지총서」. 9호.

국가인권위원회. (2004). 「지역사회에서의 노인학대 실태조사」

보건복지부, 보건복지인력개발원. (2005). 「노인학대전문 상담원 과정 교육 자료집」.

Anetzberger, G. J. (1997). Elderly Adult Survivors of Family Violence : Implication for Clinical Practice. Violence Against Women. *Thousand Oaks*. Oct. 3. 499-514.

Anetzberger, G. J. (2000). Caregiving: Primary Cause of Elder Abuse?. *Generation*. Summer. 24(2). 46-51.

Comijs, H. C., Penninx, B., Knipscheer, K., & Tilburg, W. (1999). Psychological Distress in Victims of Elder Mistreatment : The Effects of Social Support and Coping. *The Journals of Gerontology.* Jul, Vol. 54(B). (4). 240-245.

Harris, S. B. (1996). For Better or for Worse : Spouse abuse Grown Old. *Journal of Elder Abuse & Neglect.* 8 (1). 1-33.

Kemp, A. (1998). *Abuse in the Family: An Introduction*. Books/cole Pub.

Lachs, M. S., Williams, C. S., O'Brien, S., Pillemer, K.A., & Charlson, M. E. (1998). The Mortality of Elder Mistreatment. *JAMA.* Aug. Vol. 280. (5). 428-432.

Lachs, M. S., Williams, C. S., O'Brien, S., Hurst, L., & Horwitz, R. (1997). Risk

Factors for Reported Elder Abuse and Neglect : A Nine -Year Observational Cohort Study. *The Gerontologist.* Aug. Vol. 37. (4). 469-474.

Schiamberg, L. B. & Gans, D. (1999). An ecological Framework for Contextual Risk Factors in Elder Abuse by Adult Children. *Journal of Elder Abuse & Neglect.* 11(3). 79-103.

Wolf, R. (2000). The Nature and Scope of Elder Abuse. *Generations.* Summer. Vol. 24. (2). 6-12.